

의안번호	2217731
의 퇴 인	김예지 의원
회 답 일	2026.4.27.
추계번호	26E1689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근로지원인·업무지원인 이용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근로지원인·업무지원인 이용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할 경우 소득세 수입은 2028년 4억 7,700만원 등 2028~2032년까지 5년간 총 25억 7,000만원(연평균 5억 1,400만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2028~2032년

(단위: 백만원)

	2028	2029	2030	2031	2032	누적	연평균
근로지원인·업무지원인 이용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신설 (안 제59조의4제5항)	-477	-495	-513	-533	-552	-2,570	-514
근로소득세	-466	-483	-501	-520	-539	-2,509	-502
종합소득세	-12	-12	-12	-13	-13	-61	-12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9조의4제5항 (특별세액공제)	○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근로지원인 및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- (공제율) 15% - (시행일) 2027.1.1.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59조의4제5항(특별세액공제)	○	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의 시행일 및 징수기준을 고려하여 2028~2032년을 추계기간으로 설정
 - 개정안은 2027.1.1.부터 시행하고, 시행 이후 근로지원인·업무지원인 이용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
 - 해당 과세연도 귀속분에 대한 세수효과는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이루어지는 다음연도에 반영되는 것으로 전제(징수기준)
-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분에 대한 세수효과와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분에 대한 세수효과를 나누어 추계하고, 이를 합산하여 총 세수효과 산출
 -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대상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이고,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대상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중증장애 사업주이므로 각각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의 공제를 적용받게됨
-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분에 대한 세수효과는 2025년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,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분에 대한 세수효과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 예산 편성내역을 바탕으로 각각 추계함
 -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는 2023년 마련되었으나, 2026년부터 동 서비스가 정식실시 되어 관련 실적이 부재한 상황임
 - 2024~2025년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관련 정부 지원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며,

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에 관련 내역이 최초로 편성됨(총 115개사에 1,500만원씩 지원)

- 추계기간 동안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시간당 본인부담금 단가(80~300원)가 2025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전제
- 추계기간 동안 업무지원인 서비스 정부지원금 대비 본인부담금 부담 비중이 2026년(정부:본인=95:5)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전제
- 개정안에 따른 행태변화는 고려하지 않음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근로지원인 서비스, 업무지원인 서비스 개요

(1) 근로지원인 서비스

-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‘근로지원인’을 보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·지속적으로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(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19조의2)
 - 업무에 필요한 핵심 업무 수행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취지임
 - － 중증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업무보조, 의사소통 지원, 작업지도 및 정서 관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
-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서비스 제공시간당 80~3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, 나머지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됨

[표 2]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도 개요

구분	주요 내용
지원대상자	☐ 다음의 사람을 제외하고,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-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 -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 중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를 받지 않은 사람 -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
지원유형 및 내용	☐ 제1유형: 업무보조형(장애인 근로자의 부수적 업무지원) ☐ 제2유형: 의사소통형(장애인 근로자의 의사소통 지원) ☐ 제3유형: 적응지도형(장애인 근로자의 작업지도 및 정서 관리)
지원한도	☐ 주 40시간, 1일 최대 8시간 이내
비용부담	☐ ‘서비스 제공 시간×본인부담금 시간당 단가’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 납부 필요 - (단가) 근로지원인이 중증장애인을 1:1 지원하는 경우 300원, 1:2 지원하는 경우 각각 180원, 1:3 지원하는 경우 각각 130원, 1:4 지원하는 경우 각각 100원, 1:5 지원하는 경우 각각 80원
지원기간	☐ 1년 이내(서비스 재신청 가능)

자료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터넷 홈페이지,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개요

(2) 업무지원인 서비스

□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도는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¹⁾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‘업무지원인’을 보내 장애경제인이 안정적·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임(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제10조의3)

- 직원 없이 혼자 안마방 등 사업체를 운영하는 1인 중증장애인 기업 사업주를 위한 생업 활동에 필요한 보조인력을 지원함으로써, 1인 중증장애인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경영안정화를 지원하는 취지임
 - 중증장애인의 특성에 따라 업무보조, 의사소통 지원, 경영지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
- 동 제도의 운영 근거는 2023년 마련되었으나 그간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다가, 2026년 17.8억원의 예산이 최초로 편성되어 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

□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경제인은 서비스 공급가액의

1) 장애경제인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함(「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」 제2조제3호)

5%와 부가가치세를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, 나머지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됨

- 근로지원인 서비스와 업무지원인 서비스는 지원유형 및 내용은 유사하나, 서비스 지원대상자와 지원대상자의 비용부담 범위 등에서 차이 존재

[표 3]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도 개요

구분	주요 내용
지원대상자	☐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(이하 "중증장애경제인"이라 한다) 중 기업 경영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
지원유형 및 내용	☐ 제1유형: 업무보조형(중증장애경제인의 부수적 업무 지원) ☐ 제2유형: 의사소통형(중증장애경제인의 의사소통 지원) ☐ 제3유형: 경영지도형(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업무 지원)
지원한도	☐ 제1유형: 「근로기준법」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이내 ☐ 제2·3유형: 서비스 공급가액의 95% 이내로서 최대 300만원
비용부담	☐ 서비스 공급가액의 5% 및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납부 필요
지원기간	☐ 1년 이내(서비스 재신청 가능)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나. 추계 방법

(1) 근로지원인 서비스 본인부담금 부분(근로소득세 감소분)

- 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기준 세수효과를 추계한 후, 최근 4년간 근로지원인 서비스 본인부담금 총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하여 향후 추계기간 동안의 세수효과 추계
- ☐ 최근 4년간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실적은 다음과 같음
 - 2025년 기준 19,324명의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며, 이들이 부담한 본인부담금 총액은 43억 6,500만원으로 집계됨
 - 중증장애인 근로자 1인당 평균 22.6만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남

[표 4]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실적: 2022~2025년

(단위: 명, 시간, 원)

		서비스이용 인원	근로지원인 인원	연간 서비스 이용 총 시간	본인부담금 시간당 단가	연간 본인부담금 총액(백만원)
2022	1:1매칭	11,735	—	11,187,952	300	3,355
	1:2매칭	2,976	—	2,480,068	180	512
	1:3매칭	304	—	221,220	130	43
	계	15,015	13,800	13,889,240	—	3,910
2023	1:1매칭	10,897	—	10,777,045	300	3,201
	1:2매칭	4,646	—	3,639,019	180	769
	1:3매칭	857	—	511,858	130	102
	계	16,400	13,571	14,927,922	—	4,072
2024	1:1매칭	9,385	—	8,763,386	300	2,875
	1:2매칭	6,706	—	5,343,492	180	1,211
	1:3매칭	2,104	—	1,524,527	130	265
	계	18,195	13,573	15,631,405	—	4,351
2025	1:1매칭	8,623	—	8,821,533	300	2,668
	1:2매칭	6,359	—	5,521,105	180	1,149
	1:3매칭	4,321	—	3,329,214	130	547
	1:4매칭	16	—	6,471	100	0.8
	1:5매칭	5	—	4,214	80	0.6
	계	19,324	13,377	17,682,536	—	4,365

주: 1. 매칭은 근로지원인 1명당 지원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인원 수를 뜻함
 2. 1:4~1:5 매칭(동시지원)은 2025.7.1.부터 시행
 3. 근로지원인은 매칭형태별 구분이 없음(상시 변동 가능)
 4. 사업장 내 서비스이용 인원의 근무상황(연가 등) 등에 따라 매칭 형태가 근로일·근로시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 연간 서비스 이용 총 시간에 본인부담금 시간당 단가를 곱한 값과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은 다를 수 있음
 자료: 한국장애인고용공단

□ 위 자료를 바탕으로 2025년 기준 세수효과를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

-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 22.6만원에 공제율 15%를 적용해 1인당 공제세액을 산출함
-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인원(19,324명)에 2024년 기준 근로자 본인에 대하여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은 인원 중 결정세액이 있는 인원의 비중(66.1%)을 적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원을 추정함
 - －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소득구간,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습득에 어려움이 있어, 서비스 이용 중증장애인 근로자 중 과세대상자의 비중이 2024년 기준 근로자 본인에 대하여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은 전체 인원 중 결정세액이 있는 인원의 비중(국세청 제출자료)과 동일하다고 가정

- 1인당 공제세액에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원을 곱해 2025년 기준 세수효과를 추정한 결과 재정수입은 4억 3,3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5]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부분 세수효과 추계: 2025년 기준
(단위: 만원, 명)

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 (A)	1인당 공제세액 (B=A×15%)	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인원 (C)	세액공제 적용 인원 (D=C×66.1% ¹⁾)	세수효과 (-B×D, 백만원)
22.6	3.4	19,324	12,770	-433

주: 1) 2024년 귀속 근로자 본인에 대하여 장애인공제를 받은 근로자 인원(525,771명) 중 결정세액이 있는 인원(347,458명)의 비중(국세청 제출자료)

자료: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출자료, 국세청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2025년 기준 세수효과에 최근 4년간 근로지원인 서비스 본인부담금 총액의 연평균 증가율(3.7%)을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세수효과를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

- 근로지원인 서비스 본인부담분에 대하여 15%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4억 6,600만원 등 2027~2031년까지 5년간 총 25억 900만원(연평균 5억 200만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6] 근로지원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부분 세수효과 추계: 2027~2031년(소득 발생연도 기준)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근로지원인 서비스 본인부담금 부분 세수효과	-466	-483	-501	-520	-539	-2,509	-502

(2) 업무지원인 서비스 본인부담금 부분(종합소득세 감소분)

-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예산 편성 내역을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세수효과를 추정하고, 국회예산정책처의 최저임금 상승률 전망치를 적용하여 향후 추계기간 동안의 세수효과 산출
- 2026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예산에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관련 내역이 신규 편성됨에 따라 업무지원인 지원 사업은 2026년부터 정식실시되어 과

거 실적자료가 부재한 상황임

- 2023년 업무지원인 지원 제도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2025년까지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며²⁾, 2026년 4월 현재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
- 이용시간 당 정액(80~300원)으로 설정되어 있는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본인부담금과 달리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공급가액 대비 정률(5%)로 설정되어 있어 최저임금이 상승하여 업무지원인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그에 연동되어 본인부담금도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상승률에 따라 2026년 이후 세수효과가 증가한다고 가정

□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예산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음

- 총 17억 8,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, 이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정부 지원금 16억 9,000만원(=115개사×1,500만원)과 사업운영비 9,000만원으로 구성됨

[표 7]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예산 편성내역: 2026년

구 분	세 부 내 역
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	□ 16억 9,000만원(=115개사×1,500만원) - 115개사=2025년 1인 중증장애경제인 추정 수(11,519개사) × 고용노동부의 근로지원인 서비스 최초 5년간(2013~2017년) 연평균 지원비율(1%) - 1,500만원=2026년 최저시급(10,320원) × 월 125시간(유사 제도인 근로지원인의 월평균 근무시간) × 95%(중도퇴사 등 감안한 참여율)
사업운영비	□ 9,000만원 - 현장실사, 성과분석, 토론회 개최비용 등
계	17억 8,000만원

자료: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 예산안 사업설명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위 자료를 바탕으로 2026년 기준 세수효과를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

-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2026년 예산에 따른 연간 지원금액(1,500만원)에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의 비율(95:5)을 고려하여 1인당 본인부담금을 추정하고, 1인당 본인부담금에 공제율 15%를 적용해 1인당 공제세액을 산출

2) 2024년과 2025년에는 시범사업 형태로 매년 40명의 1인 중증장애경제인을 선정,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였음

함

- 서비스 이용 중증장애경제인 모두 제1유형(업무보조형) 서비스를 이용하고, 연내 1,500만원 전액 지원된다고 가정
- 정부와 95:5로 분담하는 공급가액 외 부가가치세 부담분은 고려하지 않음
- 중소기업부 소관 2026년 예산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중증장애경제인 인원(115명)에 2024년 기준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은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중 결정세액이 있는 인원의 비중(81.9%)을 적용하여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원을 추정함
 -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중증장애경제인의 소득구간,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등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중증장애경제인 중 과세대상자의 비중이 2024년 기준 본인 여부와 관계 없이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은 전체 종합소득세 신고인원 중 결정세액이 있는 인원의 비중(국세청 제출자료)과 동일하다고 가정
- 1인당 공제세액에 세액공제 적용대상 인원을 곱해 2026년 기준 세수효과를 추정한 결과 재정수입은 1,1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8]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부분 세수효과 추계: 2026년 기준

(단위: 만원, 명)

1인당 정부지원금 (A)	1인당 본인부담금 (B=A×5/95)	1인당 공제세액 (C=B×15%)	업무지원인 서비스이용 인원 (C)	세액공제 적용 인원 (D=C×81.9% ¹⁾)	세수효과 (-B×D, 백만원)
1,500	78.9	11.8	115	94	-11

주: 1. 정부지원금(A)과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인원(C)은 2026년 중소기업부 소관 예산 편성내역 기준

1) 2024년 귀속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은 종합소득세 신고인원(624,193명) 중 결정세액이 있는 인원(511,150명)의 비중(국세청 제출자료)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□ 2026년 기준 세수효과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최저임금 상승률 전망치³⁾를 적용하여 추계기간 동안 세수효과를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

- 업무지원인 서비스 본인부담분에 대하여 15%의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1,200만원 등 2027~2031년까지 5년간 총 6,100만원(연평균 1,200만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실적자료가 부재하여 향후 추계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 인

3) 국회예산정책처의 최저임금 상승률 전망(%), 2026.1.) (2027) 3.3 (2028) 3.3 (2029) 3.3 (2030) 3.3 (2031) 3.3

원은 2026년 예산 편성내역 수준과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

[표 9] 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부분 세수효과 추계: 2027~2031년(소득 발생연도 기준)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업무지원인 서비스 본인부담금 부분 세수효과	-12	-12	-12	-13	-13	-61	-12

다. 추계결과

- (귀속기준) 종합하면, 개정안에 따라 근로지원인·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4억 7,700만원 등 2027~2031년까지 5년간 총 25억 7,000만원(연평균 5억 1,400만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0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서비스별·소득 발생연도 기준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누적	연평균
근로지원인 서비스	-466	-483	-501	-520	-539	-2,509	-502
업무지원인 서비스	-12	-12	-12	-13	-13	-61	-12
계	-477	-495	-513	-533	-552	-2,570	-514

- (징수기준) 세수효과를 소득세 세목별 징수시점을 반영하여 합산하면 다음과 같음

- 개정안에 따라 근로지원인·업무지원인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할 경우 소득세 수입은 2028년 4억 7,700만원 등 2028~2032년까지 5년간 총 25억 7,000만원(연평균 5억 1,400만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근로소득세 수입은 2028년 4억 6,600만원 등 2028~2032년까지 5년간 총 25억 900만원(연평균 5억 200만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 - 종합소득세 수입은 2028년 1,200만원 등 2028~2032년까지 5년간 총 6,100만원(연평균 1,200만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세목별·징수기준

(단위: 백만원)

	2028	2029	2030	2031	2032	누적	연평균
근로지원인·업무지원인 이용 본인부담금 세액공제 신설 (안 제59조의4제5항)	-477	-495	-513	-533	-552	-2,570	-514
근로소득세	-466	-483	-501	-520	-539	-2,509	-502
종합소득세	-12	-12	-12	-13	-13	-61	-12

IV. 부대의견

□ 없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신홍철	박연서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신홍철	02-6788-4745	hongfe@assembly.go.kr